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 96. 11. 29

제 출 자 : 한기원의원의외 8

1. 제안이유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올바른 균형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활동 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정원을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함(안 제2조)
-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함(안 제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 제2항 및 제8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 제2호
-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사계”를 “의정계, 의사계”로 한다

제3조중 “16명”을 “1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①~② (생략) ③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제2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정계, 의사계-----
제3조 (사무정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 ----- 18명 ----- ----- -----